



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

중요한 안내 말씀



2019년 4월 22일부터,



식물을 불법 반입하면 엄격하게 처분합니다.

- ◆수화물 안에 수입 신고되지 않는 종자, 묘목류나 과일 등의 식물이 확인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◆수입 검사 수속을 위해 여권이나 탑승권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검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

식물방역법에 따라,

수입검사를 받지 않고 식물을 반입한 경우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연락처

- 요코하마 식물방역소 045-211-7152
- 모지 식물방역소 093-321-2601
- 나고야 식물방역소 052-651-0112
- 나하 식물방역사무소 098-868-2850
- 고베 식물방역소 078-331-2386



식물 반입에 관한
상세한 것은 이곳으로

